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
2016. 4.

미 래 창 조 과 학 부

(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)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우편환법이 공포(2016.1.6.)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우편환증서 양도허용에 따른 양수인 권리보호(안 제3조, 제10조, 제13조, 제21조, 제25조, 제26조, 제27조)

o 우편환법 제13조(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)제3항에 따라 양수인에게도 우편환증서의 지급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함.

나. 지급사실여부 조사청구 개선(안 제7조)

o 양수인이 기재할 수 없는 우편환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지급사실여부조사 청구서에서 삭제함.

다. 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조항 신설(제14조의2)

o 법 제13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우체국에 통지없이 양도 가능한 금액의 상한을 10만원으로 정함.

라. 온라인환의 발행절차 중, 특사배달제도 규정 삭제(안 제29조제2항의 5)

o 특사배달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함.
(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)

마. 우편환의 특수취급 중, 송달일시지정제도 규정 삭제(안 제32조

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)

o 우편환의 특수취급 중 경조인사장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, 송달일시지정제도 및 제2송달장소 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필요 없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 ~ 12. 31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00000000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미래창조부령 제 2016-0194 호

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수취인”을 “수취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(이하“수취인등”이라한다)”으로, 제2호의 “수취인으로부터 온라인환의 지급을”을 “수취인등으로부터 온라인환의 지급을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수취인의 성명과 주소, 송금연월일 및 송금액등을”을 “송금연월일 및 송금액등을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수취인”을 “수취인등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수취인”을 “수취인등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) 법 제13조제3항에서 “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” 이란 10만원을 말한다.

제21조의 “수취인”을 “수취인등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항, 제26조, 제27조제1항의 “수취인”을 “수취인등”으로 한다

제2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6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우편환의 종류) 「우편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우편환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3조(우편환의 종류)----------.
1. 통상환: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,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며, 수취인으로부터 통상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와 교환하여 통상환의 지급을 한다.	1.----------, 수취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(이하 "수취인등"이라 한다)----------.
2.온라인환: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,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는 한편, 온라인환증서를 발행·송달할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통지하며, 그 통지를 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송달하고, 수취인으로부터 온라인환	2.----------, 수취인등----------

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와 교환하여 온라인환의 지급을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7조(지급사실여부의조사청구등)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, 송금연월일 및 송금액등을 기재한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우편환의 지급사실여부를 당해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	제7조(지급사실여부의조사청구등) ①---------- ---------- 송금연월일 및 송금액등을 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10조(대리인에 의한 청구) ①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등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환증서의 뒷면에, 그 외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구서에 그 위임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대리인은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 청구서에 송금인 또는 수	제10조(대리인에 의한 청구) ①---------- 수취인등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. ②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수

취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	취인등----------.
제13조(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한자의 청구) 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지급등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는 경우에 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우체국은 당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게 하고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.	제13조(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한자의 청구) ----------수취인등----------.
<신 설>	제14조의2(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)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“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10만원을 말한다.
제21조(지급등의 청구) 통상환의 수취인 또는 송금인이 지급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상환증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21조(지급등의 청구) -------수취인등 ----------.
제25조(지급연기) ①우체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환증서 또는 그 기재	제25조(지급연기) ①----------

사항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등을 연기하여야 한다. 1. 통상환증서의 기재사항의 누락·정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. 수취인의 성명이 전산원부상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을 연기할 때에는 통상환증서의 뒷면에 지급정지의 사실 및 그 사유와 연기기한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지급등을 청구한 수취인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	----------. 1. ---------- 2. 수취인등---------- ②---------- ---------- 수취인등----------.
제26조(연기사유의 소멸통지) 우체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취인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	제26조(연기사유의 소멸통지) ---------- ---------- 수취인등 ----------.
제27조(지급정지의 청구) ①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통상환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정지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지급정지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	제27조(지급정지의 청구) ①----- 수취인등---------- ----------.
제29조(온라인환의 발행절차 ①온라인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	**제29조(온라인환의 발행절차)** ①----------

하는 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	----------.
②제1항의 송금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.	②----------.
1.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필통지	1. ----------
2.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증서의 보관	2. ----------
3.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의 송달	3. ----------
4.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의 지급	4. ----------
5.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사배달에 의한 온라인환증서의 송달	<삭 제>
제32조(경조인사장) ①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	**제32조(경조인사장)**----------.
②제1항의 경우에 송금인이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일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.	<삭 제>
1.송달장소가 우편법시행규칙 제	<삭 제>

25조제1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특급우편 역무를 제공하는 구역안에 있을 것	
2.송달일시가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일 것	<삭 제>
3.송달시각이 10시부터 20시까지로서 청구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후일 것	<삭 제>
4.송달시각에는 분과 초를 붙이지 아니할 것	<삭 제>
③송금인은 수취인이 송달장소에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달일시를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송금인은 온라인 환증서가 송달장소에 송달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2의 송달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.	<삭 제>
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우체국은 전기통신설비의 고장·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송달일시에 온라인 환증서를 송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송달일시지정 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	<삭 제>
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일시를 지정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	<삭 제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8497